

## 카드회원을 위한 골프용품손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 범위 및 추가)

- ①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되는 자는 동일한 단체에 속하여 동일한 카드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②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만을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2개 이상의 카드(기본카드만 해당)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1명의 카드 회원으로 간주되며 보상도 이와 같습니다.
- ④보통약관 제7조(단체 및 피보험단체)의 단체에 신규 가입하여 위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자동 추가됩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골프시설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 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도난손해 또는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또는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가 발생된 골프용품의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손해가 발생된 골프용품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골프용품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 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8.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고의

9.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 또는 마멸, 부식, 녹,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10. 분실

1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중대한 과실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골프용품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잔존물)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② 회사가 도난에 의한 골프용품손해를 보상하여 드렸을 때에는 도난 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 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그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